

아이사랑 종합공제약관

제정 2010. 01. 25
개정 2011. 03. 03
개정 2012. 02. 15
개정 2013. 02. 27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11. 29

<일반사항>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공제계약은 어린이집의 원장 등 공제계약자의 공제가입신청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공제회"라 합니다.)

②공제회가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급여시스템을 통한 가입의 경우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제증권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③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공제증권을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며 공제가입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제2조(공제약관의 교부) ①공제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②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계약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공제로 및 납부와 정산) ①상해·배상책임 담보 공제로는 영유아 및 아동(이하 "아동"이라 합니다)의 현원에 공제회가 산출·고시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현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기가입시설인 경우 아동의 전년도 월 평균 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수시가입시설 중 기준시설은 3월을 기준으로 가입 직전 월까지의 평균 아동 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3.수시가입시설 중 신규인가시설은 정원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4.현원평균 산출에 있어서 어린이집 휴지기간 등은 제외합니다.

②제1항에 의해 산출된 공제로는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계약의 만료 및 갱신과 해지 시 효력을 상실하는 계약이 유효했던 기간 중의 현원 평균을 기준으로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 ④재산손해담보 공제료는 별도기준에 따르되, 정원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⑤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단체계약에 대해서는 공제료 납부기간과 공제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공제회의 보장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정기 가입의 경우 매년 3월 1일 0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24시까지로 하며, 수시가입의 경우는 가입일 다음 날 0시부터 다음해 2월 말일 24시까지로 합니다.

제5조(가입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가입 시 공제회가 피공제자의 건강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과 어린이집 현황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공제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가입 후 알릴의무) ①공제가입 이후 계약자 및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같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상해 및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때
 - 2.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3.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4.공제의 목적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 5.공제의 목적의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
 - 6.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7.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8.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9.공제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10.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어린이집의 원장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가입의 해지)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가입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회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6조(가입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공제가입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조사 및 진찰요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가입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공제가입신청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였을 때
3. 공제회 직원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입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제3항에 의한 손해가 생긴 후에 가입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공제회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타인을 위한 가입) ①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피공제자는 공제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가입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가입의 무효) 공제가입을 신청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그 가입은 무효로 합니

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공제가입을 신청할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공제회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0조(공제료의 환급) 공제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의 통지) ①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공제급여의 지급) ①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급여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제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을 초과한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고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일 전이라도 공제회가 추정하는 공제급여액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배

- 상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제회는 그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배상책임담보와 재산손해담보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회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③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2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④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제2항에 의한 공제급여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⑤공제회는 상해담보에서 규정한 공제급여액과 배상책임담보조항에서 규정한 공제급여액을 이중으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공제급여 등의 지급한도) 공제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각 담보별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5조(공제급여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급여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이들의 대리인이 손해통지 또는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6조(소멸시효) 공제급여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17조(조사 및 진찰 요구)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제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어린이집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공제회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공제회는 공제가입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제내용의 교환) 공제회는 공제가입사항의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제가입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신청내용
3. 공제급여와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19조(심사청구)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제자 및 피해자,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회에 설치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공제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약관의 해석) ①공제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공제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집안전공제규정, 어린이집 안전공제지급 기준 및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상해담보 조항>

제23조(피공제자의 범위) ①피공제자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이 위탁을 맡아 보육중인 아동으로 합니다.

②이 계약이 성립된 후에 아동은 피공제자가 되며 어린이집 아동의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피공제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24조(보상하는 손해) ①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4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기간 내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상해담보조항과 일반사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어린이집내외 수업 중
2. 기타 통상적인 보육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반드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4.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등, 하교중

③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24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 해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제24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 [장애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공제가입금액(1인당 8천만원)에 곱하여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공제급여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 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애지급율을 적용합니다.
2.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한약제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차액료(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 상 부득이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비용

제2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2. 공제급여 수급권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급권자가 급여의 일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다른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3.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피공제자의 질병
- 5.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6.피공제자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공제회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7.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8.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9.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력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10.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2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피공제자가 제24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24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24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24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영유아 배상책임담보 조항>

제28조(피공제자의 범위) 피공제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으로 합니다.

제29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보육활동 중에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공제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공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배상책임담보 조항과 일반사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0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35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제35조제3항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공제자가 제35조 제3항 제2호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37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29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의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상의 보장금액 (단,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에 의한 하천, 호수, 운하의 범람 또는 산사태로 인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0.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공제자의 보육교직원이 보육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3.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합니다), 치료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형사상 책임
17.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 포함,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1.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제3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은 위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제33조(공제급여 등의 지급한도) ①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공제회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라”목의 비용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4조(양도) 공제목적의 양도는 공제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손해방지의무 등)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가배상심의청구나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피공제자, 이들의 대리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공제회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 3.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을 일

④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 1.제3항제1호 및 제2호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2.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3.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36조(대위권) ①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회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8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급여나 가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공제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공제회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재산손해담보 조항>

제39조(공제목적의 범위) ①이 계약에서 공제의 목적이라 함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②아래의 물건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하여야만 공제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③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공제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공제자 소유인 간판, 내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공제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가재인 경우 : 피공제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40조(보상하는 손해) ①공제회는 공제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공제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공제회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47조(잔존물)에 의해 공제회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기타 협력비용 :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4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3.공제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6.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7.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8.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9.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42조(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43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39조제1항의 손해에 의한 공제금과 제39조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44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제39조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4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제39조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공제회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⑤공제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 ④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45조(지급공제급여의 계산) ①공제회가 공제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1.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2.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 보다 작을 때: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times 공제가입금액 / 공제가액의 80% 해당액
- 3.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의 목적 중 건물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은 실제평가 손해액 전액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공제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자의 공제급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1.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공제급여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times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
- 2.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공제급여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times 이 계약에 의한 공제급여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급여의 합계액

③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를 계산합니다.

제46조(현물보상) 공제회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공제급여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47조(대위권) ①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 (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급여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48조(잔존물) 공제회가 제39조제1항의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공제회의 소유가 됩니다.

제49조(공제의 목적에 대한 조사) 공제회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공제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

제50조(피공제자의 범위) 피공제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으로 합니다.

제5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애(이하 “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35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제35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공제자가 제35 제3항 제2호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다.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37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5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에 의한 하천, 호수, 운하의 범람 또는 산사태로 인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0.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보육교직원이 보육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3.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안전검사기관,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형사상 책임
17.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 포함, 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산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3.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54조(공제급여 등의 지급한도) ①제52조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 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 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2]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 3]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②공제회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총액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공제회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52조 제2호 “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52조 제2호 “다”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과 “라”목의 비용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약관의 일반조항과 영유아 배상책임담보조항,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56조(피공제자의 범위) 피공제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으로 합니다.

제57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8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35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제35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공제자가 제35조 제3항 제2호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37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1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2]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3]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위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위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의 금액에서 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위 1항의 제2호 나,다,라 및 마의 비용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한도는 매사고당 100만원으로 합니다.

제5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5.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손해
6. 피공제자의 보육교직원이 보육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8.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위 9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또는 방사선 오염으로 인한 손해
1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
12.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13. 피공제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공제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
14.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 포함, 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6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약관의 일반조항과 영유아 배상책임담보조항,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3자 치료비 특별약관>

제61조 (제3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따른 제3자는 제23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피공제자를 제외한 어린이집 이용자(이하 “타인”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62조 (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공제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공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6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제 28조에 따른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라 합니다)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 ②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형법상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④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⑥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손해

- ⑧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⑨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체육교직원 등 피공제자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손해
- ⑩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 ⑪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본조 신설 2014. 2. 28]

제64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공제회는 타인이 제62조의 상해를 입거나 그 손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해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차액료(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 상 부득이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비용

[본조 신설 2014. 2. 28]

제65조 (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조항 및 상해담보조항,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제66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공제가입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어린이집)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생긴 우연한 화재사고(영업시설의 경우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

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6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공제회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73조(손해방지의무)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73조(손해방지의무)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마.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7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제3항의 공제회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본조 신설 2014. 2. 28]

제6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공제자(공제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8.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 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적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0.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1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공제인 가스사고 배상책임공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본조 신설 2014. 2. 28]

제69조(공제급여 등의 지급한도) ① 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6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6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6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공제회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70조(의무공제와의 관계) ① 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공제에

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의무공제는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제로서 공제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의무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공제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71조(양도) 어린이집 인가변경으로 공제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72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73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66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다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본조 신설 2014. 2. 28]

제7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제회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75조(공제급여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회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공제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공제가 아니고 다른 의무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공제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급여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급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76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현물보상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77조(조사) ① 공제회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제회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급여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7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약관의 일반조항과 영유아 배상책임담보조항,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풍수해위험담보 특별약관>

제79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이 공제기간 중에 아래의 [보상하는 재난 기준] 이상의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공제목적물(건물, 집기비품, 시설에 한합니다)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재난 기준]

구 분	기 준
-----	-----

태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에 도달될 때	
호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될 때	
홍수	상기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소 등의 물이 범람하여 통상의 물길이 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의 증가를 초래할 때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해일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다만,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지진해일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주) 상기 풍수해는 지역별로 기상주의보 이상의 기상청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공제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공제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공제목적 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에 대하여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제①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증권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본조 신설 2014. 2. 28]

제8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공제자에게 공제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공제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5.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6.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8.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9. 공제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10.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본조 신설 2014. 2. 28]

제81조 (공제가입금액) 공제가입금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제8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약관의 일반조항과 재산담보조항,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본조 신설 2014. 2. 28]

용어의 정의

보육	어린이집이 영유아 및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가스사고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한다)를 입히거나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및 장례비를 말합니다.

[별표 1] 장애분류표

장 해 분 류 표

□ 총 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인단에서는 ① 장애인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이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공제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 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4)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6)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 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口, ㅂ, ㅍ)
 - ② 치설음(齒, ㄷ, ㄸ)
 - ③ 구개음(舌, ㄱ, ㅋ)
 - ④ 후두음(喉, 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의 파절된 경

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 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이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이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애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

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 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

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연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 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 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 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 관절의 굴신 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 마다)	5
5) 한손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	70

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 기준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과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 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 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별표 2] 상해구분 및 공제급여액

상해구분 및 공제급여액

상해급별	공제급여액	상 해 부 위
1 급	1천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 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 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 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 골절 12. 그 밖의 1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급	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 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의 2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공제급여액	상 해 부 위
3 급	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 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공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그 밖의 3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 급	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퇴골 과부(원외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피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 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급별	공제급여액	상 해 부 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 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 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의 4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 급	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중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 분의 1 이상의 분쇄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 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그 밖의 5 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6 급	4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상해급별	공제급여액	상 해 부 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 치 이상 22 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8. 그 밖의 6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 급	4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골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 치 이상 18 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1. 그 밖의 7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 급	18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혜 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상해급별	공제급여액	상 해 부 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3 치 이상 15 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그 밖의 8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 급	18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철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 치 이상 12 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그 밖의 9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 급	12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상해급별	공제급여액	상 해 부 위
		7. 9 치 이상 10 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그 밖의 10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 급	12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 치 이상 8 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의 11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 급	60 만원	1. 8 일 내지 14 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 일 내지 26 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 치 이상 5 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 급	60 만원	1. 4 일 내지 7 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 일 내지 14 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 치 이상 3 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급	60 만원	1. 3 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 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 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비 고]

- 2 급 내지 11 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 2 급 내지 11 급까지의 상해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 2 급 내지 11 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 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 등급(예 : 상해내용이 주로 2 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 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더한 금액을 배상한다.

[별표 3] 후유장해 구분 및 공제급여액

후유장해 구분 및 공제급여액

등급	공제급여액	신 체 장 해
1 급	8,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급	7,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급	6,4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급	5,6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급	공제급여액	신 체 장 해
5 급	4,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급	4,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 대 관절중 2 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 2 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 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급	3,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 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등급	공제급여액	신 체 장 해
		<p>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p>
8 급	2,4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 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급	1,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등급	공제급여액	신 체 장 해
10 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 대 관절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급	1,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 급	1,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등급	공제급여액	신 체 장 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 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 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등급	공제급여액	신 체 장 해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